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이 광 회 의원의 5인

○ 제안일자 : 2003년 5월 12일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 검토내용 :

1. 제안이유

이천시 행정기구중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은 이천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에는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이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중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이천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으로 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은 이천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6조에는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으로 되어 있어 현재 시행중인 규칙의 제명과 상이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